



2017년  
**기초생활보장**  
 부양의무자 기준이  
 더 완화됩니다  
 11월부터 신청하세요!



노인,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.

지원대상

-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
급여별 선정기준 (4인가구 기준)

- 생계 134만원, 의료 178만원, 주거 192만원, 교육 223만원

부양의무자 기준

-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- 수급자가구 :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,2,3급 장애인 포함
- 부양의무자가구: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\* 포함
- \*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,2,3급(3급은 중북) 중증장애인

신청방법
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-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
상담문의 및 상세내용
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/ 보건복지부 홈페이지, 복지포털 복지로
-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 /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- 교육급여 콜센터 1544-9654 / 교육부 홈페이지
- 읍면동 주민센터